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제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##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대주주 성명		(주)동부캐피탈
신용공여 규모		4,000,000,000 원
거래조건		시작일: 2009년 8월 22일 종료일: 2010년 8월 22일
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금액	채권	-
	주식	-
대주주의 의결권 행사		
기타		<p>- 본 건은 (주)동부캐피탈에 대출중인 50억원의 대출상환 기간이 2009년 8월 22일에 도래함에 따라 대출금액을 40억원으로 변경하여 신용공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임</p> <p>- 이사회 결의일: 2009. 8. 8. (토) - 대출조건 변경일: 2009. 8. 22.</p> <p>[변경사항]</p> <p>1. 대출금액 변경전: 50억원 변경후: 40억원</p> <p>2. 대출기간 변경전: 2008. 8. 22 ~ 2009. 8. 22. 변경후: 2009. 8. 22 ~ 2010. 8. 22. ⇒ 대출기간 1년 갱신</p> <p>3. 금리 변경전: 年 기준금리 + 1.44% 변경후: 9.87% ※ 기준금리: 현 차입금 평균금리 + 기간 Spread(A3-)</p>